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1428-01

2020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장애인통계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20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장애인통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사업 개요



추진목적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획부터 조사, 자료처리, 통계공표 및 자료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사업 추진



통계 선정

- 지방통계청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자체별 필요통계 파악
- 중요도, 활용도, 지속성 및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선정 위원회에서 선정



지자체 선정

- 지방통계청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자체별 참여수요 파악
- 수요제출한 지자체 중 표준매뉴얼 참여요건에 충족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필요성 및 활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참여요건

- 예상 소요예산의 10% 이상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가능한 지자체
- 자체 예산으로 향후 계속작성 의사가 있는 지자체
- 최근 3년 이내에 표준매뉴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 최근 3년 이내에 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 또는 생산대행(표준매뉴얼 사업 포함)으로 작성한 통계* 중 중지 또는 취소**가 없는 지자체

* 2020년 승인통계부터 적용

**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참조

협업을 통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통계청(지역통계총괄과)

- ▶ 사업예산 편성 및 관리
- ▶ 통계 및 지역수요 파악
- ▶ 실행계획 수립
- ▶ 관련기관 협력관계 조율
- ▶ 중간점검회의 및 최종 보고회 개최
- ▶ 표준매뉴얼 발간 및 배포



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 ▶ 세부실시계획 수립
- ▶ 통계별 표준매뉴얼 개발 및 개정
- ▶ 협의체(TF) 구성 및 운영
- ▶ 조사 실시 또는 통계작성



지자체

- ▶ 통계수요 및 정책활용 계획 제출 (특화항목 등)
- ▶ 예산분담 및 계속작성 예산 확보
- ▶ 매뉴얼 활용 통계작성

2020년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총 4종

다운로드: 국가통계포털 KOSIS - 온라인간행물 - (주제)지역통계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든 통계개발 표준매뉴얼



농업실태조사 2021년 개발 완료 예정

담양

- ✓ 작성 목적
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래인력 양성 및 중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 작성 항목
기본사항, 소득 및 지출, 농업 일반, 농업 정책 등



어가실태조사 2022년 개발 완료 예정

제주

- ✓ 작성 목적
어가의 경영형태 및 구조 등의 파악으로 어업경영환경을 진단하고 맞춤형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작성 항목
기본사항, 생산자 조직, 교육, 판매, 고용, 정책, 어업수입 및 경영비, 부채, 어업 이외 경영 등



장애인통계 행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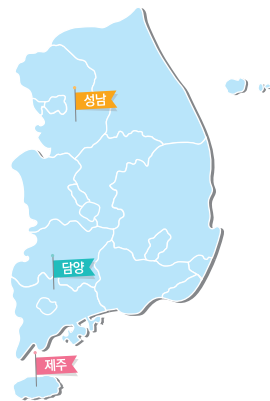
성남

- ✓ 작성 목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장애인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수교육 현황, 고용 및 취업, 지원사업 등



기본통계

- ✓ 작성 목적
통계표별 작성기준 및 수집 방법 등을 표준화한 작성매뉴얼을 개발, 지자체에 보급함으로써 기본 통계 작성 편의 및 통계 품질(정합성, 신뢰성) 제고
- ✓ 작성 항목
통계표별 용어정의 및 기준 제시, 자료출처 및 경로 안내 등('20년 기준)



2019년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총 5종

다운로드 : 국가통계포털 KOSIS - 온라인간행물 - (주제)지역통계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든 통계개발 표준매뉴얼

일자리종합실태조사

동해
김해

- ✓ 작성 목적
사업체의 인력수급 및 고용현황을 진단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제시
- ✓ 작성 항목
체감경기 및 매출상황, 근로자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및 이유, 신규 채용 여부 및 규모, 경영 애로사항 등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남원
세종
제주

- ✓ 작성 목적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 ✓ 작성 항목
출산/육아 대책, 결혼관, 향후 자녀 계획, 취업준비경험, 선호 일자리 유형, 중소기업 취업 의향, 창업에 대한 생각 등

청소년사회환경조사

양평
완주

- ✓ 작성 목적
청소년의 사회환경과 진로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방향 모색
- ✓ 작성 항목
청소년의 고민, 진로, 학교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스마트폰 이용, 유해환경, 청소년정책 등

여성통계 행정통계

광주
광산구
안동
남해

- ✓ 작성 목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사회적 삶의 수준을 분석하고 여성정책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여성의 인구, 가구와 가족, 주거와 복지, 고용, 사회 참여, 건강, 안전 등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행정통계

안산
경산

- ✓ 작성 목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외국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다문화·외국인의 인구 및 가구 규모, 주택소유, 복지, 고용, 건강, 다문화 학생 현황 등



2018년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총 7종

다운로드 : 국가통계포털 KOSIS - 온라인간행물 - (주제)지역통계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든 통계개발 표준매뉴얼

경제지표조사

평택
진천

- ✓ **작성 목적**
지역경제 상황과 사업체별 경제변화수준 측정을 통한 지역단위 경제관련 통계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사업장 일반현황, 재무상황, 투자 및 연구 개발활동실태, 기업의 경쟁력, 해외거래 실태, 업황 전망 등

귀농귀촌실태조사

곡성

- ✓ **작성 목적**
귀농·귀촌한 가구의 특성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작성 항목**
전입시기, 전입형태, 귀농귀촌결정 이유, 지역 선택 이유, 정보습득 방법, 귀농·귀촌 정책 개선 사항 등

노인실태조사

영덕
함천

- ✓ **작성 목적**
노인의 보건복지 및 경제 등 노인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작성 항목**
가구형태, 가족간의 관계, 건강상태, 경제 상태 및 경제 활동, 여가 및 사회 참여, 노인복지서비스, 생활환경 등

청년통계 행정통계

충남
광양

- ✓ **작성 목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인구 및 경제 현황 등을 파악하여 청년정책수립 및 수행에 활용
- ✓ **작성 항목**
청년의 인구, 전입현황, 주택소유현황, 연금가입현황, 구직현황 등

영유아통계 행정통계

경기

- ✓ **작성 목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특성 및 보건·사회적 특성이 영유아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유아정책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영유아의 인구, 출생 및 사망원인, 영유아 가구 경제활동상태, 보육비 지출현황, 영유아 건강상태 등

노인등록통계 행정통계

대구
울산

- ✓ **작성 목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 추이 및 취약계층을 분석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하는 등 노인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하여 노인정책에 활용
- ✓ **작성 항목**
인구, 복지, 경제능력, 건강상태, 일자리 등

창업통계 행정통계

부산

- ✓ **작성 목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사업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창업, 일자리 확대, 청년 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 하는 초기 자료로 활용
- ✓ **작성 항목**
사업자수, 창업 사업체수, 폐업 사업체 수, 기술창업 지원 산업, 생활밀접업종 등




2017년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총 7종

다운로드 : 국가통계포털 KOSIS - 온라인간행물 - (주제)지역통계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든 통계개발 표준매뉴얼


복지실태조사



여주 양산

- ✓ **작성 목적**
지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수요, 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지역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주거, 근로상태 및 일자리, 가계지출, 가계소득, 가계부채, 건강상태, 복지시설 만족도 등


관광실태조사



부산 중구 문경

- ✓ **작성 목적**
관광지 방문 내외국인의 관광실태 및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관광특징 및 문제점 분석하여 관광정책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여행지 방문 경험, 여행 동기 및 목적, 여행 일정 및 형태, 여행소비 구조 등


지역사회조사



서울 은평구 강릉

- ✓ **작성 목적**
주관적 인식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지역주민의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등 삶의 질 평가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천안 세종

- ✓ **작성 목적**
취업실태, 취업희망 내용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일과 전공, 교육수준과의 비교, 고용형태 및 구직방법, 비임금 근로 선택 이유, 희망 직장 유형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인천 남구 아산

- ✓ **작성 목적**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사업체 일반현황, 연간 매출액, 거래수단 비중, 일일평균 판매 고객수 등


특산물실태조사



광양 장흥

- ✓ **작성 목적**
지역특산물의 생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특산물생산규모, 고정·유동자본 현황, 판매금액 및 판매경로, 경영시 장애요소 등

지역서비스업실태조사



춘천

- ✓ **작성 목적**
지역 서비스업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 **작성 항목**
사업체 일반현황, 최근 신규채용 및 인력 감축 규모, 연간 매출액, 판매 및 마케팅 경로파악 등



장애인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현황

● 개발 목적

- 기획, 자료처리, 통계공표 및 관리 등 장애인통계 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지역통계 작성기관 간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신뢰성 높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전반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

● 개발 과정 및 절차

- 표준매뉴얼 개발 추진방안 수립
 -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관 간 역할, TF 구성·운영,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일정 등 추진방안 수립
 -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통계 시범지역 선정*
 - * 시범지역: 경기도 성남시
- 매뉴얼 개발 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성항목 등 개발
 - 협의체는 통계청(본청, 지방청) 담당자, 시범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통항목과 선택항목으로 이루어진 ‘기본항목’과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자율항목’으로 구성



표준매뉴얼 개발 실무 TF 구성

- ▶ (주관) 개발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표준매뉴얼 개발 팀장, 담당주무관
- ▶ (필수) 시범 작성지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본청 지역통계총괄과 담당자
- ▶ (자문) 지역 주민, 관련 사회단체, 지역연구원 등
- ▶ (운영) 1차('20.4.), 2차('20.8.)

-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보안관리 등 공감대 형성 및 협의, 통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문서로 자료를 요청하되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 요구
- 통계표 작성
 - 지자체 관련 부서, 지역 주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 표준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시범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기획, 생산, 공표단계 등 표준프로세스를 매뉴얼로 작성하여 배포

• 주요 검토사항

- 집계표 형식으로 자료를 입수할 경우 국가통계포털이나 타 기관 자료(간행물, 공표자료 등)와 수치를 비교하여 자료를 검증하는 작업 선행
 - 간행물: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 공표자료: 주민등록인구 통계(행정안전부), 사회보장 통계(한국사회보장정보원), 특수교육 통계(교육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KOSIS)
- 통계는 작성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른 통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 기준 등의 명확한 적시 필요

• 시범작성 한계점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장애인통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원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 집계표 형태로 자료를 입수할 경우 지표 구성 및 변경이 어려우며(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림), 자료의 품질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활용시 유의사항

- 기본통계표로 구성된 공통항목은 지역 간 비교를 위해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고
 - 기본통계표 중 선택통계표는 지자체 정책수요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성, 선택통계표는 정책수요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성
- 자율통계표는 지역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구성 및 활용 가능

Contents

표준매뉴얼 개발 현황	09
-------------	----

01 통계 개요 13

제1절. 행정통계 개요	14
제2절. 장애인통계 개요	17

02 통계작성 기획 21

제1절. 기본계획 수립	22
제2절. 통계표 설계	26
2-1. 통계표 체계	26
2-2. 통계표 구성	27
2-3. 주요 통계표	29
제3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33
제4절.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43
4-1.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43
4-2. 행정자료 입수	44

03	통계표 작성	47
04	결과 분석	53
05	자료공표 및 관리	59
	제1절. 통계 이용자 서비스	60
	제2절. 개인정보 보호	62
06	부록	65
	1. 통계표 설명서	66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127
	3. 작성계획안	137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151
	5. 표준매뉴얼 문의처 안내	152

PART

01

2020 장애인통계

통계 개요

행정통계 개요

장애인통계 개요



01 통계 개요

제1절 행정통계 개요

행정통계 일반 현황

- 개념: 통계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주된 원천자료로 이용하여 통계적인 처리를 거치거나 다른 자료와의 연계·결합 등을 통해 생성한 자료 및 이를 집계하여 생산한 자료로 신규통계를 작성
-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비교

구분	통계조사자료		행정자료
	전수조사*	표본조사**	
포괄범위	모집단 전체 대상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목표 모집단은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
내용	광범위한 자료	심층분석 주제에 적합	행정목적에 따라 제한적
개념/정의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에 기초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에 기초	행정적 필요성에 따름
품질관리	오차 최소화 설계 가능	상대적 저비용	주요항목 외에는 관리소홀
비용	고비용	상대적 저렴	조사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주기	5년	월간, 분기 또는 연간	월간 또는 연간 (행정프로그램에 따라 좌우)
시의성	조사 종료 1년 후 자료사용 가능	정기조사는 몇 주, 임시조사는 몇 달 내 결과 산출	자료입수 시기에 따라 월간, 분기 자료생산 가능
응답부담	전 국민, 전체 가구 대상	대상자에게는 크나 평균적으로는 적음	추가 부담 없음

* 전수조사란 통계조사에서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집단 구성원 각각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는 단위 조사

**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에 대해서만 측정을 실시하는 조사

- 행정통계 개발의 한계점

- (행정자료 자체의 한계) 행정자료는 당초 행정 본연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어 정의, 포괄범위 차이, 결측값 존재 등으로 표준화 작업 및 자료 정제 필요
- (원행정자료 확보의 어려움) 「통계법」에 행정자료 활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행정자료 제공에 미온적임
- (대용량 행정자료 처리·보완의 어려움) 입수한 대용량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측값 보완, 자료 간 연계·통합 등 통계적 가공처리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함
- (시의성 높은 통계생산 곤란) 월별, 분기별 등 보다 시의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최신 행정 자료의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

- 행정통계 개발의 기대 효과

- (정책맞춤형 상세 통계 생산) 산업·직업 세부 분류별, 읍·면·동 등 소지역별 통계자료의 생산이 가능하고, 세부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데이터 생산 가능
- (비용 절감 및 응답부담 경감) 기존의 조사통계 또는 새로운 통계수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작성 가능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통계조사를 방지하고 통계작성 비용 절감과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을 경감
- (통계정확성 제고) 통계작성 시 보다 다양한 행정자료와의 연계·결합 등으로 행정통계의 정확성 제고

행정통계 작성 흐름도

업 무	추진 내용	주체
통계작성 기획 기본계획 수립	◦ 통계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작성개요, 소요예산 등	지자체
↓		
작성항목 설계	◦ 작성항목 선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 기본항목 선정 및 자율항목 개발	지자체 (대행기관)
↓		
통계작성 승인신청	◦ 통계작성 승인신청 자료 준비 및 의뢰 - 통계 작성개요, 기획서, 결과표 등	지자체
↓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 행정자료 입수 가능시기 파악 ◦ 입수기관과 협의를 통한 자료 입수	지자체
↓		
통계표 작성 및 결과공표		
통계표 작성 및 분석	◦ 데이터 정비 및 통계표 작성	지자체 (대행기관)
↓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 분석 결과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KOSIS,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표 게시	지자체

제2절 장애인통계 개요

일반현황

- 통계명: 장애인통계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보고통계
- 작성방법: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직접 입수 또는 집계하여 작성
- 작성 및 공표주기: 1~3년 주기로 작성
 - 지속적으로 장애인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여 작성·공표
- 개발 배경
 - (장애인통계 부족) 장애인의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과 질 등 관련 통계 자료가 필요하나 부족
 -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인구, 복지,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등 대상 통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
- 장애인통계 현황

통계명	지역	작성여부	최초 연도	주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통계	세종특별자치시	○	2018	2년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	인천광역시	○	2019	2년



활용분야

- (장애인 인구) 장애인 인구 특성 파악을 통해 가족 양육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등급 대신 생애주기, 장애유형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장애인복지 및 사회서비스)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 현황 및 사회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 안정 및 시설 공급 정책 마련에 활용
-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현황, 희망 일자리, 급여 등을 파악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활용
- (장애인교육) 특수교육 현황 및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 교육 활동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
 - 특수학교 및 학급 개설, 장애인 교육 편의시설 환경 개선 등



관련 통계 간 사전 검토내용

- 관련통계 현황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통계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
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작성시작	2018	2019
작성주기	2년	2년
작성유형	행정통계(가공통계)	행정통계(가공통계)
작성대상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공표범위	시도	시군구

- 검토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의 경우 통계작성 기관과 타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원자료를 연계 가공하여 통계를 작성
- 인구, 복지, 교육, 고용, 건강 5개 분야에 대한 장애인통계 작성

- 검토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장애인통계의 특수성으로 등록장애인명부 원자료 및 건강분야 자료 입수에 한계가 있음
- 행정자료간 연계와 가공 없이 작성이 가능한 원자료를 직접 입수하거나 집계표로 입수하여 최종 작성



PART
02

2020 장애인통계

통계작성 기획

기본계획 수립

통계표 설계

통계작성 승인 신청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02

통계작성 기획

제1절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 목적, 용어정의 등 통계작성 기본계획을 수립
- 통계작성의 전반적인 추진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통계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장애인통계 개요

- 작성목적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 작성기준
 - 작성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
 -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시점(6월 말 등)으로 작성 가능하나 12월 말 기준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
- 작성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작성주기**
 - 지속적으로 장애인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자체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여 1~3년 주기로 작성하여 공표
- **작성방법**
 -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직접 입수 또는 집계하여 작성
- **작성항목**
 - 인구, 복지,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별 항목

 **업무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주요 추진 업무	소요기간
통계작성 기획	통계작성 기획서 수립 (정책활용을 위한 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	1~2개월
통계작성 준비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2~3개월
	통계작성 승인 신청	1~2개월
	행정자료 검토	1~2개월
	행정자료 입수	3~4개월
통계표 작성	지자체 행정자료 활용	1~2개월
	집계표로 자료 입수	1~2개월
결과 분석 및 공표	결과보고서 작성	1~2개월
	결과공표 및 자료제공	1~2개월

* 기본항목(공통, 선택) 활용으로 작성항목 및 통계표 설계 소요기간 단축 가능

소요예산 관리

- 소요예산 산출 검토내역을 참고하여 소요예산 산출

〈 소요예산 산출 검토내역 〉

구분		내용	검토내역	비고
작성준비	작성항목 설계	운영비	전문가 자문료, 간담회 비용	
		국내여비	전문가 자문 회의 여비	외부 대행*
		업무추진비	전문가 자문 간담회 비용	
통계 작성	행정자료 입수 및 연계	일용임금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4대 보험	일용임금×11%(30일 이상)
		운영비	PC 임차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행정자료 입수협의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자료 입수협의 간담회	
결과분석 및 공표	결과분석	일용임금	업무보조원	모집인원×운용일수
		민간이전	4대 보험	일용임금×11%(30일 이상)
		운영비	PC 임차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보고서 검토협의 여비	외부 대행*
		업무추진비	보고서 검토협의 간담회	
	공표	운영비	보고서 발간비	인쇄단가×인쇄부수

* 통계청 및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작성예시



〈 장애인통계 예산* 내역 〉

(단위: 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계	21,513	
■ 일용임금	8,934	
- 업무보조원	8,934	68,720원×1명×130일(주휴일 포함)
■ 운영비	9,086	
- 보고서 인쇄	5,000	
- 자문료	1,800	
· 작성항목 설계	600	200,000원×3명×1회
· 보고서 작성	600	200,000원×3명×1회
· 정책활용	600	200,000원×3명×1회
- 기타운영비 등 (사무용품, 홍보용품 등)	1,550	소모품, 홍보용품 구입
- 공공요금	286	단기전화 설치 및 통신료
- 특근매식비	300	6,000원×50일×1명
- 장비임차료	150	장비 임차료(PC 1대)
■ 국내여비	2,300	
- TF 회의, 자문회의 등	1,440	80,000원×3명×6회
- 행정자료 입수	480	60,000원×2명×4회
- 관련기관 업무협의	378	63,330원×2명×4회
■ 업무추진비	250	
- 업무 협의회	250	업무협의(25,000원×10명)
■ 민간이전	943	
- 산재, 고용, 국민, 건강	943	일용임금×0.1055%

* 공무원 관리비(인건비)가 미포함된 예산내역임. 민간 및 용역 시 추가예산 소요

제2절

통계표 설계

주요내용

- 공통항목을 포함하여 통계작성 목적에 맞게 항목 설계
- 관련 기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항목 개발

2-1

통계표 체계



통계표 체계

- 통계표는 크게 기본통계표와 자율통계표로 구분
 - (기본통계표) 장애인통계 작성 시 기본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통계표로, 모든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통 통계표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선택 가능한 선택통계표로 구분
 - (자율통계표) 지자체의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구성하는 통계표



기본통계표 (공통/선택)

(단위: 개)

영역(부문)	기본통계표		합계
	공통통계표	선택통계표	
계	46	32	78
인구	18	8	26
복지	9	10	19
교육	3	6	9
고용	12	6	18
사회서비스	4	2	6

2-2 통계표 구성

기본통계표

-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장애인통계 기본통계표(선택통계표 포함)를 작성하여 지역간 비교 가능성 제고

지자체 자율통계표 개발

- 기본통계표 이외에 별도로 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자율통계표로 추가 가능
- 정책 추진 방향 설정 및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1단계)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대내외 담당부서 등)
 - (2단계) 수요항목에 대응하는 자료원 발굴 및 확보가능성 검토
 - (3단계~끝)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에 기반한 자율통계표 개발 및 제공

〈 수요조사 서식(예) 〉

소속 (부서)	부문 명칭	작성 항목	용도	비고



적용 분류체계

- 산업분류체계(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7.1. 시행)

대 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2-3 주요 통계표

 기본통계표 현황(공통 및 선택)

영역	자료명	작성통계표	구분	페이지
인구 (26)	등록장애인	1. 연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68p
		2. 성별 장애인 인구	공통	
		3. 연령별 장애인 인구	공통	69p
		4. 연령별 장애인 성비	공통	70p
		5. 생애주기별 장애인 인구	공통	71p
		6. 생애주기별 장애인 성비	선택	
		7. 지역별 장애인 인구	공통	72p
		8. 지역별 장애인 성비	선택	
		9. 지역별 노인 장애인 인구	공통	73p
		10. 연도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11.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74p
		12.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13.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선택	75p
		14. 지역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15. 지역별 장애정도별 노인 장애인 인구	선택	76p
		16. 연도별 장애유형별(대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17. 연도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77p
		18. 연도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19. 성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선택	78p
		20. 성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선택	
		21. 연령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79p
		22.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대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영역	자료명	작성통계표	구분	페이지
인구 (26)	등록장애인	23. 연령계층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선택	80p
		24. 지역별 장애유형별(대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25.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81p
		26.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선택	
복지 (19)	지자체 행정자료	1. 연도별 장애인 예산	공통	82p
		2. 장애인 국고보조사업 예산	공통	83p
		3. 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선택	84p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4.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공통	87p
		5.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공통	
		6. 생애주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선택	88p
		7.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공통	
		8. 성별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선택	89p
		9. 연령별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선택	
		10.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공통	90p
		11. 성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선택	
		12. 연령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선택	91p
		13. 생애주기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선택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14. 성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공통	93p
		15. 연령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공통	
		16. 생애주기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선택	94p
		17. 지역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공통	
		18. 장애정도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선택	95p
		19.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선택	

영역	자료명	작성통계표	구분	페이지
교육 (9)	특수교육통계	1. 특수보육 어린이집	공통	97p
		2. 특수교육 학교 및 대상자	공통	
		3.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학교 및 대상자	선택	98p
		4. 연도별 특수교육 졸업생 진학 및 취업	선택	99p
		5. 졸업유형별 특수교육 졸업생 진학 및 취업	선택	
		6. 연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공통	100p
		7.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선택	
		8.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선택	101p
		9. 특수학급 설치별 장애인 편의시설	선택	
고용 (18)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공통	103p
		2. 성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공통	
		3. 연령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공통	104p
		4. 학력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공통	
		5. 임금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선택	105p
		6. 장애정도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공통	
		7. 직종별 장애인 구인 및 구직자	공통	106p
		8. 산업별 장애인 구인 및 취업자	공통	
		9.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구인 및 취업자	선택	107p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10.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및 고용 현황	공통	109p
		11. 성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공통	111p
		12. 연령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공통	112p
		13. 장애정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공통	113p
		14.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공통	114p
		15.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선택	
		16. 직종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선택	115p

영역	자료명	작성통계표	구분	페이지
고용 (18)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17. 공공기관 상위 직종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선택	115p
		18. 민간기업 상위 직종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선택	116p
사회 서비스 (6)	지자체 행정자료	1. 연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공통	118p
		2. 장애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공통	
		3. 연령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선택	
		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결과	선택	119p
		5. 장애인 활동 보조인	공통	
		6.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실적	공통	

 **자율통계표 현황(표준매뉴얼 시범작성 지역)**

영역	자료명(원)	작성통계표	페이지
복지 (6)	지자체 행정자료	연도별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 현황	121p
		월별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현황	
		연도별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황	122p
		연도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현황	
		연도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지역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고용 (4)	지자체 행정자료	연도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123p
		성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124p
		지역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연령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사회 서비스 (6)	지자체 행정자료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125p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직업재활시설 이용 현황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126p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장애인 기타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제3절

통계작성 승인 신청

주요내용

- 신규 통계를 작성할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해야 함
 - 통계작성 승인 작성절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변경승인 절차 등 참고

02 통계작성 기획



통계작성승인 제도

- 통계작성승인 제도의 취지
 - 유사·중복통계작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인력·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제거
-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처음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의 승인통계 이외의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해당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계작성 승인 요건

- 기승인 통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
-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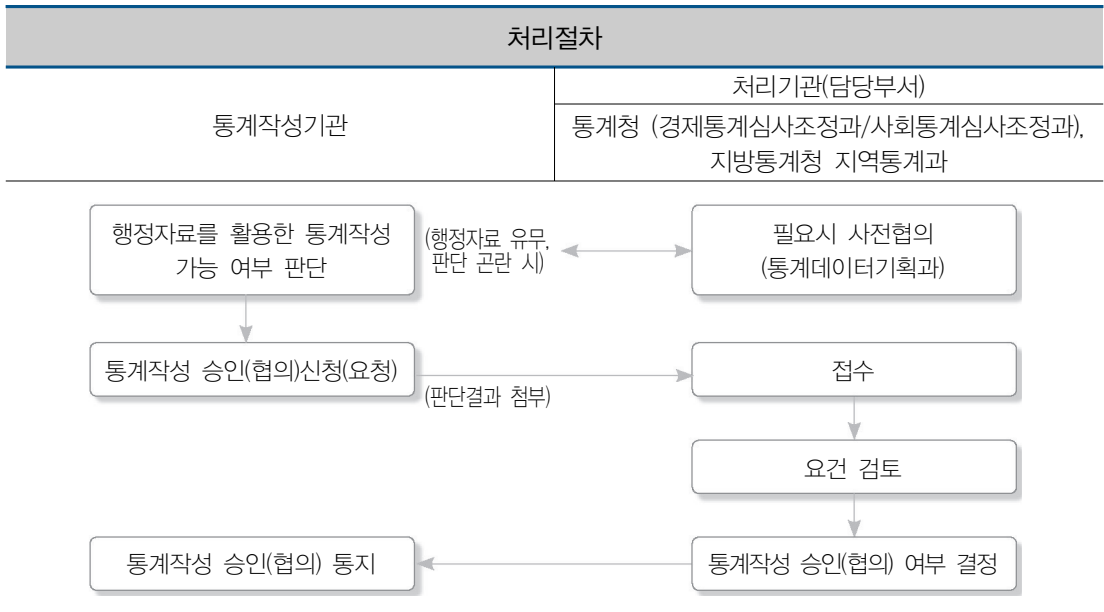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통계작성 승인 사항

- 명칭, 종류, 목적, 사항, 대상, 기준시점, 기간, 주기, 방법, 자료수집체계, 분류, 기준, 조사표, 보고서식, 공표서식, 국제기준 준수 여부

• 통계작성 승인 절차도



• 승인 관련 부서

- 시도 단위: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시군구 단위: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해당 통계의 조사 등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 15일 전까지 신청



통계법 시행령 제24조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출방법) 공문발송(통계작성승인 신청서, 수신처: 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 지방청 지역통계과)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변경 사항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 (별지 제7호) 통계작성승인(협의) 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 통계작성 승인신청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술한 통계개요(작성예시 38p 참조) 포함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 ⑥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기능여부 판단 결과
 - 통계청장에게 판단의뢰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 ⑦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작성예시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2. 21.>

나라통계시스템 (<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조사·가공 통계) 7일(보고통계)
------	------	------	---------------------------

① 통계의 명칭: 00시 장애인통계	② 통계의 종류: 일반 <input type="checkbox"/> , 지정 <input type="checkbox"/>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00시 등록 장애인 통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통계법 제18조)	④ 통계작성 사항(주요 항목명 또는 작성 주요 통계표명) 인구, 복지,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5개 분야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가구 <input type="checkbox"/> , 사업체 <input type="checkbox"/> , 그 밖의 대상 <input type="checkbox"/>
	모집단: 통계작성 기준시점 00도 00시에 등록장애인 인구
	대상 범위 및 규모: 00도 00시 등록장애인 인구, 00,000명
	대상 지역: 00도 00시

⑥ 통계작성 기준시점(기간)	작성기준년도 12기 ※ 일부 자료는 제공기관 및 지표 성격에 따라 기준시점 차이가 있음
-----------------	---

⑦ 조사(보고) 기간	익년도 2월 ~ 12월
-------------	--------------

⑧ 작성 주기	○년
---------	----

⑨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	[] 조사	[] 전수, [] 확률표본, [] 유의표본, [] 기타: [] 면접, [] 전화, [] 우편(팩스), [] 배포(유지) [] 집합, [] 인터넷, [] 관측, [] 기타:
	[○] 보고	[○] 행정집계, [] 행정조사
	[] 가공	이용통계명: 자료명:

⑩ 통계작성 체계: 각 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 작성 - 00시 내부 행정자료 → 00시 - 고용노동부 등 외부 자료 → 00시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 표준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 그 밖의 분류:
---	---

⑫ 통계결과 공표:	⑬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	------------------------

⑭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1. 예 [] → 작성기준명:	2. 아니오 [] 3. 해당없음 [○]
	국제기구 제공 여부	1. 예 [] → 국제기구명:	2. 아니오 [○]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 인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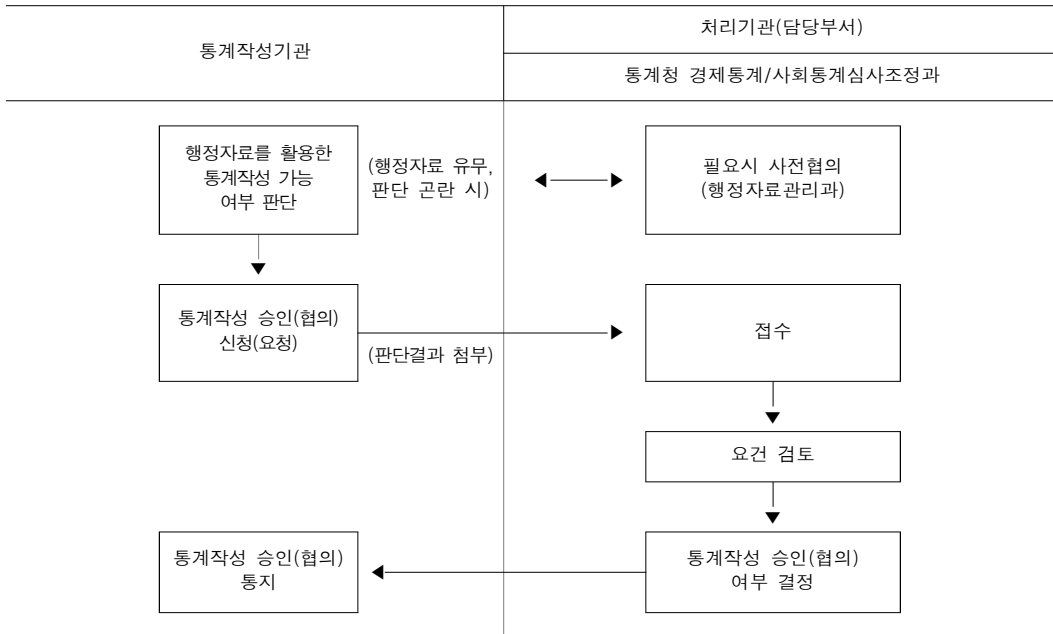
작성방법

① 작성 통계

-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 명칭을 적습니다.
 - 작성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 통계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 작성대상: 통계작성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사업체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행정집계: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면·동 → 시·군·구(과/팀) → 시·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 ② 검토 내용: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의 항목(통계표)별 검토한 행정자료(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및 관련 서식), 보유기관,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을 적습니다.
- * 기타 검토 관련 세부자료나 참고자료는 제출할 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절차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장애인통계 작성 기획서

1. 통계 개관

- ① 신청사유: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
- ② 통계명(영문): 장애인통계(영문:)
- ③ 통계작성기관: ○○○시 ○○○과
 - 인터넷 주소: <http://0000.00.kr>
 - 전화번호: (000) 0000 - 0000
- ④ 통계의 종류
 - 통계종류: 일반통계
 - 통계작성방법: 보고통계
- ⑤ 작성연혁
 - ○○○○년 ○○월: 최초 조사
 - ○○○○년 ○○월: 제2회 조사
 - ○○○○년 ○○월: 제3회 조사

2. 통계작성근거

- ① 작성목적: 통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② 관련법령: 해당없음 또는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조문을 기입

3. 통계작성방법

- ① 작성대상: 장애인 개인
- ② 모집단: 기준 시점 해당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 약 00,000명
- ③ 작성항목
 - 5개 분야 78개 항목(① 인구 ○개 항목 ② 복지 ○개 항목 ③ 교육 ○개 항목 ④ 고용 ○개 항목 ⑤ 사회서비스 ○개 항목)
- ④ 자료수집방법: 행정자료 집계 및 활용
- ⑤ 자료수집 체계(용역)
 - 지자체 각 부서, 행정자료 보유기관 → ○○○지자체
- ⑥ 작성주기 및 조사기간
 - 작성주기: 1년/2년/3년
 - 조사기간: 작성기준년도 익년 2월~12월
- ⑦ 공표범위
 - 지역: 시도, 시군구 등 공표범위가 시도인 경우 시도, 시군구까지인 경우 시도 및 시군구까지 기입
 - 내용: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등 현황

4. 통계활용지원

- ① 공표주기: 매월, 매년, 2년주기, 3년주기
- ② 공표시점: 익년 12월, 익익년 3월 등
- ③ 공표방법: 보고서 발간 및 국가통계포털(KOSIS) 게재
- ④ 국제기구 제출여부: 미제출

5. 기타

- ① 해당 통계예산: 약 00,000천원
- ② 관련 통계명: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통계, 2019년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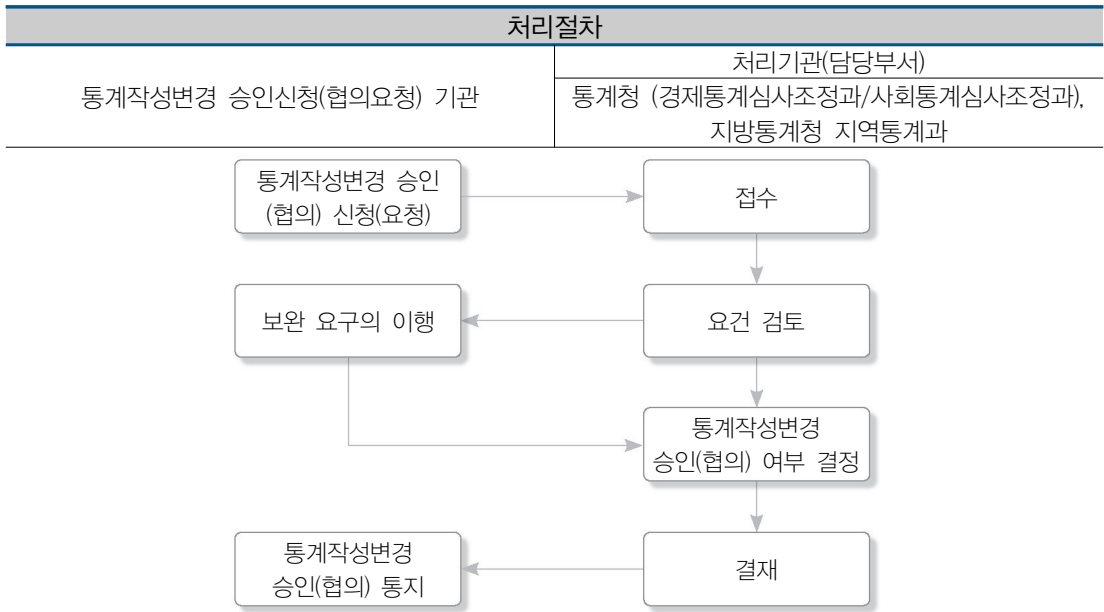
• 승인작성 변경승인(협의) 대상

-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 및 협의를 거친 사항(통계법 시행령 제25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

* 모집단, 작성항목 등 승인내용 중 일부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이 필수적임

변경승인(협의) 대상	구체적 예시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통계명칭, 종류(일반통계/지정통계)
2. 통계의 작성 목적	근거법률 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조사항목 등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
4. 통계작성의 대상	모집단, 표본 대상범위, 대상지역 등
5. 기준시점 · 기간 및 주기	작성기준시점, 작성(조사)기간, 작성주기 등
6.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전수, 표본), 보고, 가공통계
7. 자료수집 체계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 (예: 시군구→시도→작성기관)
8. 분류 및 기준	표준(무역, 산업, 직업, 교육, 질병사인)분류 등
9. 조사표, 보고서식, 통계표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여부	준수(작성기준 명) 또는 비준수

•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도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받은 사항을 변경승인(협의)을 받으려면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출방법) 공문발송(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수신처: 경제통계심사조정과/사회통계심사조정과, 지방청 지역통계과)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공문시행한 첨부물과 동일한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추후 수정 및 보완은 통계정책관리시스템 내에서 실시

-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

- (별지 제8호)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협의요청서)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 (통계법 시행규칙 제14조)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통계청장에게 판단의뢰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참 고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2. 21.>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승인신청서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설계·조사(보고)·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	------	------	--------------------------------------

① 신청 통계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통계의 종류	일반 [],	지정 []
	작성변경 연월일		

②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③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통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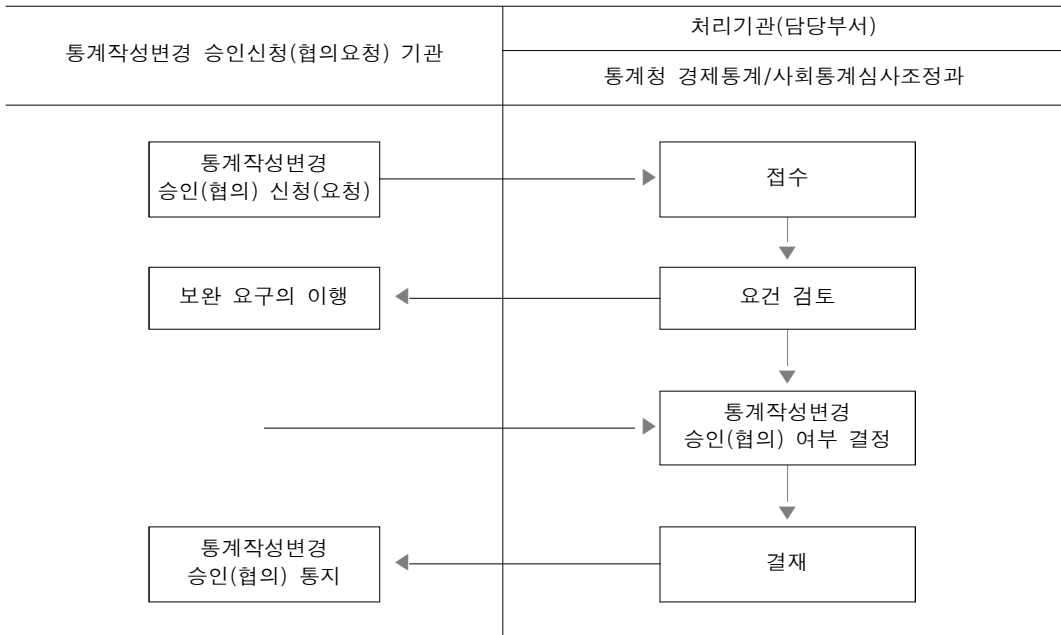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① 작성변경 연월일: 통계작성기관에서 해당 통계의 작성을 변경하려는 시기를 적습니다.
- ② 변경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변경 전과 후의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③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4절 행정자료 검토 및 입수

주요내용

-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보완 관리 등 협의
-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 경감

4-1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자료보유 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등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 형성

- 열악한 조사환경, 국민 응답부담 경감 차원,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 사전에 공감대 형성 필요



행정자료 활용 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 방법 설명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에 해당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됨을 설명

* 단,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대체식별번호(PIN)로 변환 후 삭제하여 개인식별정보 입수 차단



최소한의 자료요청으로 제공기관의 부담 경감

- 자료제공 기관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는 등 제공범위 등에 관한 협의 추진

행정자료 기본정보 수집

- 행정자료별 레이아웃 및 속성 등 기본정보는 보유기관에서 사전에 입수하여 자료요청 및 입수 시 활용

4-2 행정자료 입수

행정자료 입수 절차

입수 절차	세부 내용
필요자료 파악	• 신규통계 생산에 필요한 행정자료 보유기관, 보유행정자료 및 활용 가능한 조사통계 등
입수계획 수립	• 기준시점, 입수범위, 입수방법, 입수항목 등 입수계획 수립
입수 협의	• 입수대상 행정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 서식 등을 검토 • 자료 보유기관과 입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자료 입수	• 자료보유기관과 협의하여 문서로 요청
자료 활용	• 입수한 행정자료를 연계 방법에 따라 활용

문서상 요청사항

통계법 시행령 제38조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 ①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 ② 행정자료의 명칭
- ③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 ④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 ⑤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⑥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행정자료 제공기관 및 주요 내용

구분	자료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입수시기
인구	등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인구	8월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월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8월
	장애인 사업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사업 현황	3월
교육	특수교육통계	지역 교육청	특수 교육 현황	9월
고용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구직, 구직, 취업	8월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고용노동부	의무고용 사업체 및 근로자	3월
	장애인 사업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3월
사회 서비스	장애인 사업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사회 서비스 현황	3월



PART
03

2020 장애인통계

통계표 작성



03 통계표 작성

주요 내용

- 지자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표 작성
- 타 기관 원자료 입수가 어려운 경우는 집계표로 자료 요청

지자체 행정자료 활용

-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 행복e음) 등을 활용하여 통계표 작성

구분	자료명	주요 내용	비고
인구	등록장애인	- 연도별 장애인 인구 - 성별 장애인 인구 - 연령별, 생애주기별 장애인 인구 - 지역별 장애인 인구 -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성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연령별, 생애주기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구분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급여종류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 성별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 연령별, 생애주기별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 지역별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 장애정도별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집계표로 자료 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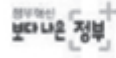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원자료 입수가 곤란한 경우는 집계표 형태로 요청
 - 대상자료, 집계기간, 집계단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계표의 표측 및 표두 항목 구분을 자세히 정의한 후 제공 요청

구분	자료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요청시기
교육	특수교육통계	지역 교육청	- 특수교육 학교 및 대상자 - 학교별 편의시설	9월
고용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자	8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및 고용 현황	3월



통계청

통계청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과장)
(경유)

제목 []시 장애인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협조 요청

1. 평소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경인지방통계청은 []시와 협력하여 지자체 정책활용에 필요한 「[]시 장애인 통계」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불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요청기관: 경인지방통계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나. 요청목적: []시 장애인통계 작성

다. 요청자료: []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등[불임2 참조]

라. 최신일자: 2020. 8. 14.(금)

3. 제공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행정자료의 정보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및 기술적 보안조치에 따라 철저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불임 1. []시 장애인통계 개발개요 1부.

2. []시 장애인통계 집계표 양식(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부. 끝.



작성예시

집계표 요청 양식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및 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시				○○도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전체								
정 부	공무원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100인 미만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PART

04

2020 장애인통계

결과 분석



04

결과 분석

주요내용

- 설계한 결과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집계하고,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통해 결과표 확정
- 이용자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



관련 자료와의 수준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원(ssis.or.kr) 자료 비교
- 교육청에서 입수한 집계표와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수치 비교



결과분석

- 정확한 통계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이용자 유의사항)
- 분석 작성에 앞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아웃라인 작성
-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나 표보다 그래프를 활용하여 정보 제공



유의사항

-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표기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집계 가능하므로 작성시점, 작성 기준 등 각 자료의 속성에 따라 자료 해석에 유의



최종보고서 수록 내용

항 목	수 록 내 용
표제지	• 발간등록번호, 연도, 제목,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국가통계승인마크, 승인번호
이용자를 위하여	• 이용시 유의사항, 통계작성대상연령, 통계작성기간 등, 문의처
목차	• 통계개요, 주요 활용 행정자료, 통계표, 결과 분석 등
통계개요	• 작성목적, 법적근거, 작성연혁, 작성주기, 작성기간, 결과 공표 등
활용 행정자료	• 행정자료명, 제공기관, 관련 주요 작성항목
작성항목	
주요 결과 요약	
부문별 결과	
부록	• 통계표, 주요용어, 행정자료 서식



최종보고서 오류 점검 내용

부문	세부항목	
보고서 구성	표지	간행물번호가 제시되어 있는가?
		국가통계 승인마크 및 승인번호가 있는가?
	용어, 개요 등 설명	결과 요약(요약 보고서)이 기술되어 있는가?
		작성연혁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이용자를 위한 설명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자료 문의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발행정보	발행일, 발행처, 발행기관이 제시되어 있는가?
	기타	주요용어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통계 결과물만 제시되어 있는가?		
보고서 내용	행정자료 및 작성항목	주요 활용 행정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행정자료별 주요 작성항목이 제시되어 있는가?
	통계표 및 그래프	통계표(그래프) 형태의 일관성이 있는가?
		통계표(그래프)에 단위가 제시되어 있는가?
		수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이용자를 위하여

- 「OOO 장애인통계」는 OO도 OOO 각 과, 중앙행정기관 및 국내 주요기관에서 보유한 행정자료를 제공 받아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 마다 자료 출처를 표기하였음
 - 각 통계표는 지표의 성격 및 행정자료 입수 사정에 따라 시점(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 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통계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의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최근 자료를 수록하였음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0」: 단위 미만, 구성비 0%
 - 「-」: 해당자료(숫자) 없음
 -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거나 수치가 5 이하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로 표기함
- ※ 본 보고서는 OO시 홈페이지(<http://OOOOO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록된 자료에 관한 문의는 OO시 OOOO과(☎000-000-0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PART

05

2020 장애인통계

자료공표 및 관리

통계 이용자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05

자료공표 및 관리

제1절 통계 이용자 서비스

주요내용

- 통계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 제공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

- 통계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경로,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및 내용 등을 통계 이용자에게 안내
 - KOSIS(<http://kosis.kr>): 통계표
 - 지자체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고서, 통계포털 등
- KOSIS 통계표 수록을 위한 이용 방법
 - (담당 부서)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 (통계DB시스템) <http://stat.kosis.kr/nsist>
 - ※ 자세한 사항은 통계DB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DB시스템 자료실에 수록)



담당자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자 또는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



통계설명자료 제공

- 각종 통계 설명자료(예: 메타정보, 방법론 보고서, 품질보고서 등)를 통계포털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통계설명자료 DB: <http://meta.narastat.kr>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설명자료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주요내용

- 행정통계를 생산할 때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적·기술적 보완 대책 마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통계법 제4조의③(국가 등의 책무),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비밀 보호 의무를 지고, 위반 시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등에 의하여 처벌 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통계응답자”라 한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자료 활용 시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부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법 제24조, 제33조 비밀보호의무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제공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이 원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암호화
자료 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오프라인) 개별 방문하여 보안 USB를 통한 저장 후 보안봉투에 봉인 후 제출
자료확인, 정제 및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수자료 서버에 장착 • 개인식별번호를 보안번호로 변환 후 자료정제 및 DB 구축
통계작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한 행정자료 활용 • 개인PC로 다운로드 및 화면캡처 불가



행정자료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

- 행정자료 보안을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 구축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 입수한 행정자료의 개인 식별번호는 암호화를 거쳐 보안식별번호로 대체
 -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의 암호화 및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의무
- 외주용역 사업 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용역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PART
06

2020 장애인통계

부록

통계표 설명서

주요 행정자료 서식

작성계획안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표준매뉴얼 문의처 안내



부록 1 통계표 설명서

1. 기본통계표

영역 **인구** 자료 **등록장애인 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등록장애인 자료	지방자치단체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등

▶▶ 자료 설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료.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부록 2-1)에 기재된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일자, 가구원 수 등 활용 가능.
-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행정정보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

▶▶ 주요 용어 설명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생애주기: 주요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 따라 만 0~5세 ‘영유아기’, 만 6~12세 ‘학령기’, 만 13~17세 ‘청소년기’, 만 18~64세 ‘청장년기’, 만 65세 이상 ‘노년기’와 같이 5단계로 구분
- 장애인 성비: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수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 시행일 '19.7.1.)에 따라 종전 장애 등급제가 폐지,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정도’를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고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고용」 부문 ‘중증장애인’과 정의가 상이하므로 이용 시 주의
- 장애유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2개 대분류(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4개 중분류(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와 15개 소분류(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로 구분

[장애인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노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노년증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작성방법

- 원자료를 입수하여 통계표를 작성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하여 작성



▶▶ 통계표 구성

공통

〈 연도별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광역시/도			전국		
	인구 수 ¹⁾ (A)	장애인 수 ²⁾ (B)	장애인 비율 ³⁾ (B/A×100)	인구 수 (A)	장애인 수 (B)	장애인 비율 (B/A×100)	인구 수 (A)	장애인 수 (B)	장애인 비율 (B/A×100)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2.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년도
 3. ○○시, 등록장애인 자료, 각 년도

-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실시간 업데이트로 추출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3) 장애인 비율(%) = (장애인 수 / 인구 수) × 100,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을 나타냄

공통

〈 성별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남자								
여자								

- 자료: 1.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년도
 2. ○○시, 등록장애인 자료, 각 년도

공통

〈 연령별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65세 이상)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각 년도

공통

〈 연령별 장애인 성비 〉

(단위: 명, %)

구분	계	남자 (A)	여자 (B)	성비 ¹⁾ (A/B×100)
전 체				
(구성비)				
9세 이하				
(구성비)				
10~19세				
(구성비)				
20~29세				
(구성비)				
30~39세				
(구성비)				
40~49세				
(구성비)				
50~59세				
(구성비)				
60~69세				
(구성비)				
70~79세				
(구성비)				
80세 이상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성비 = (남자 인구 / 여자 인구) × 100, 여자 100명 당 남자 수

공통

〈 생애주기별¹⁾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영유아기								
학 령 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 년 기								

자료: 1.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년도
 2.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생애주기는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12세, '청소년기' 만 13~17세, '청장년기' 만 18~64세, '노년기'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

선택

〈 생애주기별¹⁾ 장애인 성비 〉

(단위: 명, %)

구분	계	남자 (A)	여자 (B)	성비 (A/B×100)
전 체				
	(구성비)			
영유아기				
	(구성비)			
학 령 기				
	(구성비)			
청소년기				
	(구성비)			
청장년기				
	(구성비)			
노 년 기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생애주기는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12세, '청소년기' 만 13~17세, '청장년기' 만 18~64세, '노년기'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

공통

〈 지역별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인구 수		장애인 수		장애인 비율 (B/A×100)
	(A)	(구성비)	(B)	(구성비)	
전 체					
○○○					
○○○					
○○○					

자료: ○○시,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고, 읍면동별 작성 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선택

〈 지역별 장애인 성비 〉

(단위: 명, %)

구분	계	남자 (A)	여자 (B)	성비 (A/B×100)
전 체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고, 읍면동별 작성 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공통

〈 지역별 노인 장애인¹⁾ 인구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수 (A)	노인 장애인 수 (B)	노인 장애인 비율 (B/A×100)
전 체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만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고, 읍면동별 작성 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공통

〈 연도별 장애정도별¹⁾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자료: 1.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년도

2. ○○시, 등록장애인 자료, 각 년도

주: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

공통

〈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 체			
(구성비)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공통

〈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 체			
(구성비)			
9세 이하			
(구성비)			
10~19세			
(구성비)			
20~29세			
(구성비)			
30~39세			
(구성비)			
40~49세			
(구성비)			
50~59세			
(구성비)			
60~69세			
(구성비)			
70~79세			
(구성비)			
80세 이상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선택

〈 생애주기별¹⁾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 체			
(구성비)			
영유아기			
(구성비)			
학 령 기			
(구성비)			
청소년기			
(구성비)			
청장년기			
(구성비)			
노 년 기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생애주기는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12세, '청소년기' 만 13~17세, '청장년기' 만 18~64세, '노년기'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

공통

〈 지역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 체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고, 읍면동별 작성 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선택

〈 지역별 장애정도별 노인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 체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고, 읍면동별 작성 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공통

〈 연도별 장애유형별¹⁾(대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자료: 1.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년도

2.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장애유형은(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대분류 2개(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중분류 4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소분류 15개(지체장애, 뇌병변장애등)로 구분

공통

〈 연도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자료: 1.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년도
2.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공통

〈 연도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 기능 의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내부 기관 의 장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 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정신						

자료: 1.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각 년도
2.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선택

〈 성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 체					
	(구성비)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선택

〈 성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남자	여자
		(구성비)	(구성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공통

〈 연령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전 체					
(구성비)					
19세 이하					
(구성비)					
20~29세					
(구성비)					
30~39세					
(구성비)					
40~49세					
(구성비)					
50~59세					
(구성비)					
60~69세					
(구성비)					
70세 이상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공통

〈 생애주기별¹⁾ 장애유형별(대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 체			
(구성비)			
영유아기			
(구성비)			
학 령 기			
(구성비)			
청소년기			
(구성비)			
청장년기			
(구성비)			
노 년 기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생애주기는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 만 0~5세, '학령기' 만 6~12세, '청소년기' 만 13~17세, '청장년기' 만 18~64세, '노년기'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

선택

〈 연령계층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상위1	상위2	상위3	상위4	상위5	기타 ¹⁾
18세 미만							
(구성비)							
18~64세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소분류(15개) 중 상위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유형

공통

〈 지역별 장애유형별(대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 체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고, 읍면동별 작성 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공통

〈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 체				
	(구성비)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구성비)		
	내부기관의 장애	(구성비)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구성비)		
	정신 장애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선택

〈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 체					
	(구성비)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			
		(구성비)			
		뇌병변	(구성비)		
		시각	(구성비)		
		청각	(구성비)		
		언어	(구성비)		
	내부 기관의 장애	안면	(구성비)		
		신장	(구성비)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신장 외	(구성비)	
			지적	(구성비)	
정신장애		자폐성	(구성비)		
		정신	(구성비)		

자료: ○○시,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영역 **복지**

자료 **지자체 행정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애인 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예산



▶▶ **자료 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예산, 예산 및 지출 대비 비율 등



▶▶ **작성방법**

- 해당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하여 작성



▶▶ **통계표 구성**

공통

〈 연도별 장애인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지출액(A)	전체 예산			
		계(B)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¹⁾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	
	계(C)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지원	총 지출액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C/A)	총 예산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C/B)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예산자료, 각 년도

주: 1)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

공 통

〈 장애인 국고보조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0000년			0000년			0000년		
	국고	지방비	국고 보조율	국고	지방비	국고 보조율	국고	지방비	국고 보조율
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 수당(기초)									
장애 수당(차상위 등)									
장애인연금									
장애인 보조기구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자료: ○○시, 예산자료, 각 년도

선택

〈 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0000년	구분	0000년	구분	0000년
계		계		계	
상위1		상위1		상위1	
상위2		상위2		상위2	
상위3		상위3		상위3	
상위4		상위4		상위4	
상위5		상위5		상위5	
기타		기타		기타	

자료: ○○시, 예산자료, 각 년도

영역 **복지**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수급자구분별, 급여종류별 장애인 수급자 현황 등

 ▶▶ **자료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장애인 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부록2-2)에 기재된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급자 구분(일반, 시설), 급여 종류(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자료 활용 가능

 ▶▶ **주요 용어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만으로는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 일반, 시설, 조건부, 특례 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특례수급자: 의료, 교육, 자활특례 수급자
 - 의료: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교육: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자활: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 일반수급자: 시설, 조건부, 특례수급자 외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종류 중 주된 4종(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급여를 말함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A의 30% 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A)의 40% 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A)의 43% 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A)의 50% 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작성방법

- 원자료를 입수하여 통계표를 작성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하여 작성



▶▶ 통계표 구성

공통

〈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¹⁾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시/군/구			전체 수급자 대비 장애인 비율 (B/D×100)	
	인구수 (A)	수급자 수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B/A×100)	인구수 (C)	수급자 수		
		(B)	(구성비)			(D)		(구성비)
전체								
남자								
여자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

공통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시/군/구			전체 수급자 대비 장애인 비율 (B/D×100)	
	인구수 (A)	수급자 수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B/A×100)	인구수 (C)	수급자 수		
		(B)	(구성비)			(D)		(구성비)
전체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65세 이상)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선택

〈 생애주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시/군/구				전체 수급자 대비 장애인 비율 (B/D×100)
	인구수 (A)	수급자 수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B/A×100)	인구수 (C)	수급자 수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D/C×100)	
		(B)	(구성비)			(D)	(구성비)		
전체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공통

〈 수급자구분별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시/군/구		장애인 비율 (A/B×100)
	(A)	(구성비)	(B)	(구성비)	
전체					
일반					
시설					
조건부					
특례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 시설, 조건부, 특례 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고, '시설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특례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특례 수급자를 나타내며, 이 외의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선택

〈 성별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계	일반	시설	조건부 및 특례
전 체				
(구성비)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선택

〈 연령별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계	일반	시설	조건부 및 특례
전 체				
(구성비)				
19세 이하				
(구성비)				
20~29세				
(구성비)				
30~39세				
(구성비)				
40~49세				
(구성비)				
50~59세				
(구성비)				
60~69세				
(구성비)				
70세 이상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공통

〈 급여종류별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시/군/구		장애인 비율 (A/B×100)
	(A)	(구성비)	(B)	(구성비)	
전 체 ²⁾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주: 1)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43%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2) 수급자 전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 중 주된 4종(생계, 주거, 의료, 교육)의 수급자 수이며, 각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수치임

선택

〈 성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

(단위: 명)

구분	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 체					
남자					
여자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선택

〈 연령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

(단위: 명)

구분	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 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65세 이상)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선택

〈 생애주기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

(단위: 명)

구분	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 체					
청소년기 이하					
청장년기					
노년기					

자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영역

복지

자료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자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현황 등



▶▶ 자료 설명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장애인 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부록2-2)에 기재된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자료 활용 가능



▶▶ 주요 용어 설명

-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항)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만 2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수당 수급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작성방법

- 원자료를 입수하여 통계표를 작성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하여 작성



▶▶ 통계표 구성

공통

〈 성별 장애인연금¹⁾ 및 장애(아동)수당²⁾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수 (A)	수급자 수 (B)				장애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B/A×100)
		계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수당	
전 체						
(구성비)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자료: ○○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 주: 1)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 '장애수당' 수급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공통

〈 연령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계	(구성비)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수당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65세 이상)								

자료: ○○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선택

〈 생애주기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계	(구성비)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수당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청소년기 이하								
청장년기								
노년기								

자료: ○○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공통

〈 지역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계	(구성비)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수당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								
○○○								
○○○								

자료: ○○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며, 읍면동별 작성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선택

〈 장애정도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 체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자료: ○○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며, 읍면동별 작성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선택

〈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단위: 명, %)

구분	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 체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자료: ○○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0000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며, 읍면동별 작성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영역 **교육**

자료 **특수교육통계**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특수교육통계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청	특수보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학교 및 대상자 현황 등



▶▶ **자료 설명**

- 교육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시책과 추진내용을 수록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를 활용



▶▶ **주요 용어 설명**

- 특수보육 어린이집: 장애아를 전문으로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있음
- 특수교육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함
-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작성방법

- 해당 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하여 작성



▶▶ 통계표 구성

공통

〈 특수보육 어린이집 〉

(단위: 개, 명)

구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¹⁾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²⁾			
	어린이집 수	장애 아동 수	보육 교직원 수 ³⁾	1인 평균 아동수	어린이집 수	장애 아동 수	보육 교직원 수	1인 평균 아동 수
○○광역시/도								
○○시/군/구								
전국								

자료: 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0000년

2. ○○시, 어린이집 자료, 0000년

주: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아 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3) 보육 교직원은 장애아반을 맡고 있는 일반 보육교사 혹은 특수교사, 치료사를 대상으로 집계

공통

〈 특수교육 학교 및 대상자¹⁾ 〉

(단위: 개, 명)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학교수	학급수 (순회)	학생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교수	학급수 (순회)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광역시/도								
○○시/군/구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전공과								
전국								

자료: 1.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0000년

2.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 자료, 0000년

주: 1)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선택

〈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학교 및 대상자 〉

(단위: 명)

구분	계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 지체	지체 장애	청각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기타
0000년									
0000년									
0000년									
계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단위: 명)

구분	계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 지체	지체 장애	청각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기타	
특수학교	소계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소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학급	소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1.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각 년도
 2.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 자료, 각 년도

선택

〈 연도별 특수교육 졸업생 진학 및 취업 〉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				취업		비진학/ 미취업수
		계	전공과	대학 (전문대 포함)	진학을	취업자 수	취업률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1.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각 년도
 2.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 자료, 각 년도

선택

〈 졸업유형별 특수교육 졸업생 진학 및 취업 〉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취업		비진학/ 미취업수
		계	전공과	대학 (전문대 포함)	진학을	취업자 수	취업률	
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전공과 졸업자								

자료: 1.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0000년
 2.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 자료, 0000년

공통

〈 연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

(단위: 개,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1.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각 연도
 2.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 자료, 각 연도

선택

〈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

(단위: 개,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전 체													
국공립													
사립													

자료: 1.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0000년
 2.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 자료, 0000년

선택

〈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

(단위: 개,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자료: 1.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0000년
 2.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 자료, 0000년

선택

〈 특수학급 설치별 장애인 편의시설 〉

(단위: 개,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전 체													
특수학교 설치학교													
특수학교 미설치학교													

자료: 1.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0000년
 2.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 자료, 0000년

영역

고용

자료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금별, 직종별, 산업별 구직 및 취업 현황 등



▶▶ 자료 설명

- 장애인고용정보포털(워크투게더)에 등록된 구인(부록2-3)·구직자(부록2-4) 및 취업자 수. 장애유형, 장애정도, 직종, 산업, 사업체 규모 등 활용 가능



▶▶ 주요 용어 설명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자: 장애인고용정보포털(워크투게더)에 구인·구직 및 취업 등록된 자
 ※ 장애인고용정보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구인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구인배수: 구인 수 / 구직자 수
- 취업률(%): (취업자 수 / 구직자 수) × 100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제1항 1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 작성방법

- 해당 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하여 작성



▶▶ 통계표 구성

공통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¹⁾ 〉

(단위: 명, %)

구분	0000년	0000년
구인 수		
구직자수		
구인배수 ²⁾		
취업자수		
취업률 ³⁾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각 년도

주: 1)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자 현황'은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을 이용한 구인/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구인배수(명) = 구인 수 / 구직자 수

3) 취업률(%) = 취업자 수 / 구직자 수 × 100

공통

〈 성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

(단위: 명, %)

구분	구직자 수				취업자 수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전 체								
남자								
여자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각 년도

공통

〈 연령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

(단위: 명, %)

구분	구직자 수				취업자 수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각 년도

공통

〈 학력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

(단위: 명, %)

구분	구직자 수				취업자 수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전 체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각 년도

공통

〈 임금정도별¹⁾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

(단위: 명, %)

구분	구직자 수				취업자 수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전 체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미분류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각 년도

주: 1) 임금별 구직자 수의 임금은 희망 임금

공통

〈 장애정도별¹⁾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

(단위: 명, %)

구분	구직자 수				취업자 수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전 체								
중증								
경증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각 년도

주: 1) 장애정도별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장애인

공통

〈 직종별 장애인 구인 및 구직자¹⁾ 〉

(단위: 명, %)

구분	구인 수				구직자 수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전 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기타 ²⁾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각 년도

주: 1) 구인 수는 구인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이며, 구직자 수는 구직 장애인의 거주지를 기준

2) '기타'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7) 대분류(10개) 중 나머지 5개 분류를 나타냄

공통

〈 산업별 장애인 구인 및 취업자 〉

(단위: 명, %)

구분	구인 수				취업자 수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전 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정보통신업(J)								
제조업(C)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도소매(G)								
기타 ¹⁾								
미분류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각 년도

주: 1) '기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0) 21개 대분류 중 나머지 15개 분류를 나타냄

선택

〈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구인 및 취업자 〉

(단위: 명, %)

구분	구인 수				취업자 수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전 체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미분류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각 년도

영역 **고용**

자료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고용노동부	의무고용 사업체 및 고용 현황,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상위 직종별 근로자 현황 등



▶▶ 자료 설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부록5)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도, 장애유형, 직무 등 활용 가능



▶▶ 주요 용어 설명

- 장애인의무 고용: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국가·자치단체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가짐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및 민간기업체
-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만,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중증장애인은 예외)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1호]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시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 수 - 적용제외 근로자 수*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수를 기재(다만, 중증장애 인근로자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함)
-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장애인(60시간이상))÷상시근로자 수



▶▶ 작성방법

- 해당 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하여 작성



▶▶ 통계표 구성

공통

〈 장애인 의무고용¹⁾ 사업체 및 고용 현황 〉

(단위: 개소, 명, %)

구분	○○시/군/구				○○광역시/도			
	대상 사업체수 ²⁾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수 ³⁾	고용률 ⁴⁾	대상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전 체								
정 부	공무원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100인 미만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 국			
	대상 사업체 수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률
전 체				
정부	공무원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100인 미만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0000년

- 주: 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〇〇시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체 대상 장애인 근로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해당 지역 등록장애인과 상이할 수 있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포함)
- 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체
- 3) ()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 시 근로자 수
- 4)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은 현원의 2배로 산정하여 합산) / 상시근로자 수

공통

〈 성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계	(구성비)	정부 부문	(구성비)	공공 기관	(구성비)	민간 기업	(구성비)
남자								
여자								

(단위: 명, %)

구분	○○광역시/도							
	계	(구성비)	정부 부문	(구성비)	공공 기관	(구성비)	민간 기업	(구성비)
남자								
여자								

(단위: 명, %)

구분	전국							
	계	(구성비)	정부 부문	(구성비)	공공 기관	(구성비)	민간 기업	(구성비)
남자								
여자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0000년

공통

〈 연령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계	(구성비)	정부 부문	(구성비)	공공 기관	(구성비)	민간 기업	(구성비)
전 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단위: 명, %)

구분	○○광역시/도							
	계	(구성비)	정부 부문	(구성비)	공공 기관	(구성비)	민간 기업	(구성비)
전 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단위: 명, %)

구분	전국							
	계	(구성비)	정부 부문	(구성비)	공공 기관	(구성비)	민간 기업	(구성비)
전 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0000년

공통

〈 장애정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계	(구성비)	정부 부문	(구성비)	공공 기관	(구성비)	민간 기업	(구성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단위: 명, %)

구분	○○광역시/도							
	계	(구성비)	정부 부문	(구성비)	공공 기관	(구성비)	민간 기업	(구성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단위: 명, %)

구분	전국							
	계	(구성비)	정부 부문	(구성비)	공공 기관	(구성비)	민간 기업	(구성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0000년

공통

〈 장애유형(중분류)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광역시/도		전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상이등급 ¹⁾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0000년

주: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선택

〈 장애유형(소분류)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광역시/도		전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상이등급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0000년

선택

〈 직종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광역시/도		전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¹⁾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0000년

주: 1) 정부부문-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제외

선택

〈 공공기관 상위 직종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광역시/도		전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상위1						
상위2						
상위3						
기타 ¹⁾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2019

주: 1) '기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0개) 중 '사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분류를 나타냄

선택

〈 민간기업 상위 직종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

(단위: 명, %)

구분	○○시/군/구		○○광역시/도		전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상위1						
상위2						
상위3						
기타 ¹⁾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0000년

주: 1) '기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0개) 중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사무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분류를 나타냄

영역 **사회서비스**

자료 **지자체 행정자료**

 ▶▶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애인 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시설 및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현황 등

 ▶▶ **자료 설명**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등 관련 사업 자료

 ▶▶ **주요 용어 설명**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함(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작성방법**

- 해당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하여 작성



▶▶ 통계표 구성

공통

〈 연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단위: 개, 명)

구분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시설 자료, 각 년도

공통

〈 장애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¹⁾ 〉

(단위: 명)

구분	계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신장외	지적	자폐성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주: 1)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

선택

〈 연령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¹⁾ 〉

(단위: 명)

구분	계	6-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0000년									
0000년									
0000년									
남자									
여자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주: 1) 지원대상: 만6세 ~ 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자

선택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결과〉

(단위: 명)

구분	계	적합	부적합	재조사	각하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0000년					
(구성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선택

〈 장애인 활동 보조인¹⁾ 〉

(단위: 명)

구분	등록인원	활동인원
0000년		
0000년		
0000년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대 이상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주: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공통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실적 〉

(단위: 건)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신장	지적	자폐성	기타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2. 자율통계표(시범작성지역)

영역 **복지/고용/사회서비스**

자료 **지자체 행정자료**



활용 자료

자료명	입수기관	내용
장애인 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	바우처 사업, 의료비 지원 등 복지사업, 장애인 일자리 현황, 장애인 시설 및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현황 등



자료 설명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관련 사업 자료



주요 용어 설명

-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함(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작성방법

- 해당기관에 집계표 형식으로 요청하여 작성



▶▶ 통계표 구성

〈 연도별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사회적응 활동지원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 월별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장애인 택시 바우처	
	이용인원	이용금액
합계		
0000년 12월		
0000년 1월		
0000년 2월		
0000년 3월		
0000년 4월		
0000년 5월		
0000년 6월		
0000년 7월		
0000년 8월		
0000년 9월		
0000년 10월		
0000년 11월		
0000년 12월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 연도별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 연도별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분	냉/난방비 지원	
	대상	금액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 연도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대상	금액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 지역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대상	금액
전 체				
○○○				
○○○				
○○○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고, 읍면동별 작성 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 연도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명)

구분	일반형 일자리 ¹⁾			복지 일자리 ²⁾		
	계	전일제	시간제	계	참여형	특수교육 - 연계형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각 년도

- 주: 1)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 수행
- 2)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연계형 일자리로 구분

〈 성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명, %)

구분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전일제	(구성비)	시간제	(구성비)	참여형	(구성비)	특수교육	
							-연계형	(구성비)
전 체								
남자								
여자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0000년

〈 지역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명, %)

구분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전일제	(구성비)	시간제	(구성비)	참여형	(구성비)	특수교육	
							-연계형	(구성비)
전 체								
○○○								
○○○								
○○○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0000년

시군구별, 읍부/면부/동부, 권역별, 읍면동별 등으로 작성하며, 읍면동별 작성시 비식별화(5명 미만 값 제거, 셀통합 등) 처리에 유의

〈 연령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명, %)

구분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전일제	(구성비)	시간제	(구성비)	참여형	(구성비)	특수교육	
							-연계형	(구성비)
전 체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자료: ○○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0000년

〈지역사회 재활시설¹⁾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시설수	이용 장애인 수	종사자			평균임금(구간)			
			합계	장애인	비 장애인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시설 자료, 각 년도

주: 1)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직업재활시설¹⁾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시설수	이용 장애인 수	종사자			평균임금(구간)			
			합계	장애인	비 장애인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시설 자료, 각 년도

주: 1)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직업재활시설 이용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전 체			
근로사업장 ¹⁾			
구성비			
보호작업장 ²⁾			
구성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시설 자료, 0000년

주: 1)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2)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

(단위: 개, 명)

구분	시설수	이용 장애인 수	종사자			평균임금(구간)			
			합계	장애인	비 장애인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시설 자료, 각 년도

〈 활동 지원기관¹⁾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

(단위: 개, 명)

구분	시설수	이용 장애인 수	종사자			평균임금(구간)			
			합계	장애인	비 장애인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시설 자료, 각 년도

주: 1) 활동보조인을 채용하여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장애인 기타시설¹⁾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현황 〉

(단위: 개, 명)

구분	시설수	이용 장애인 수	종사자			평균임금(구간)			
			합계	장애인	비 장애인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0000년									
0000년									
0000년									

자료: ○○시, 장애인 복지시설 자료, 각 년도

주: 1)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제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록 2 주요 행정자료 서식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9. 1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	------	------	------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남 []여
	사회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간접적 소득(감면 등) []건강 및 의료 []고용 []주거 []일상생활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호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해당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장애인등록 신청	[]신규 []조정 []재판정	· 재발급 사유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기간만료 []훼손 []분실
[]장애인통합복지 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포함 []미포함 []신규 []재발급 []정보변경 []반납	[]기재사항 변경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카드전환(-)
	[]신용기능 []직불기능	[]기타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정보변경 []반납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신규 []재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 반납사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어·수리) 신청	[]교부 []대어 []수리	[]사망 []양도·증여 []폐차 []등록말소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휴대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TV 수신료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고용 서비스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직업진로상담 []취업지원 및 상담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청인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자택 []직장 []전자우편()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차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중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신청기관 방문 []주민등록기관 방문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종류 []장애인복지단체·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재가(자가, 전세, 월세) []시설입소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명()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 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 관/예금주(관계)	
----------------	--	-----------------------	--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²⁾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³⁾: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⁴⁾: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⁵⁾: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⁶⁾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⁷⁾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 2),3) 해당자에 한함
-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자가 []임차 ⁹⁾ []기타 ⁹⁾ []교육급여
영유아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PC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 U+ []SK 텔레콤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인	[]기초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장애인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차상위 자활급여 []시설이용임소 []차상위 자산형성 []타법 의료급여 ¹⁰⁾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센터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 사항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택적 동의 동 의
()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 사항 확 인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 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¹⁾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3. 구인신청서



구 인 신 청 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 쪽)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 인 등 록 번 호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법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명(*)	
	소재지(*)	(우편번호 -)	시(도)	구(시·군)		
	전화번호(*)		팩 스		홈페이지	http://
	업종(*)		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명	장애인 근로자 수	명	설립일	년 월 일
	기업형태(*)	[]공사·공공 []대기업 []외국계 []중소 []개인 []협회·단체				

구 인 사 향	모집직종(*)		채용인원(*)	명	
	직무내용(*)				
	학 력(*)	() 이상 []무관	경력 요건(*)	[]신입 []경력(년 월) []무관	
	근 무 지(*)	시(도)	구(시·군)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 개월) []시간제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기타()			
	우대조건	[]특정전공재() []자격면허소지자() 컴퓨터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활용능력 []회계프로그램 []기타() []외국어(외국어명:) []상, []중, []하, 공인시험 등급/점수(____이상)			
	기타희망사항				
구인등록목적	[]알선 희망 []외국인 채용 []구직정보 이용 []기타()				

근 로 조 건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연봉 []월급 []일급 []시급 (_____ 원 이상)			[]상여금(%)
	근무시간(*)	[]교대 없음 : ~ :	[]2교대 : ~ :	[]3교대 : ~ :	휴 무 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토 []격주토 []기타()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숙사 []통근버스 []직장보육시설 []중식제공 []중식비지원 []교통비 []주택자금 []기타() []건물내경사로 []휠체어진입로 []계단난간 []유도(점자)블록 []비상경보장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통근버스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세면장 []장애인용 주차장 []치료시설 []기타()			

210mm×297mm(재활용품60g/㎡)

(뒤 쪽)

선발사항	모집기간(*)	~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기타()
	선발장소			선발방법	[]서류 []면접 []필기 []기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기타()			
	채용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무료문자서비스 []수신 []수신거부			
전자우편		@ 전자우편서비스 []수신 []수신거부			

작업 환경	드는 힘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5~20Kg의 물건을 다룸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서거나 걷는 일 거의 없음	[]일부 서서 하는 작업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듣고 말하기 중요
	시력	[]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손 작업	[]큰 물품 조립작업	[]작은 물품 조립작업	[]정밀한 작업
	양손 사용	[]한손으로 작업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양손으로 작업

작업수행시 가능 또는 불가능한 신체조건

기타 회사소개 또는 특이사항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체명

신청인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워크투게더 공개 여부(*) (http://www.worktogether.or.kr)	[]전체공개 []비공개 ※ 전체공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포함)를 제외한 모든 구인정보
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 구인정보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워크넷 사용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등), 구직장애인 등에 공유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안 내 ▶

1.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이전에 구인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생략 가능)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구인등록일부 3개월이며, 그 기간 중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구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재활용품60g/㎡)

4. 구직신청서



구 직 신 청 서

※ (*)표시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 쪽)

구 직 등 록 번 호			
개 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우편번호 -) 우편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사 진) 3cm×4cm
	전화번호(*)	집전화 무료문자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전자우편	@ 전자우편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희 망 취 업 조 건 (*)	희 망 직 종	희망입사형태(*)	
	1.	[]신입 []경력 []무관	[]대기업 []공사·공공
	2.	[]신입 []경력 []무관	[]중소기업 []외국계 []개인 []협회·단체
	희망근무 지 역(*)	1.()시·도 ()구·군 2.()시·도 ()구·군 []관계없음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 개월) []시간제(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기타()	
	근무시간	: ~ : ()교대가능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연봉 연 ()만원 이상 []월급 월평균 ()만원 이상 []일급 일당 ()원 이상 []시급 시간당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 근로지원인, 편의시설, 기숙사, 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최 종 학 력 (*)	학교명	전 공 (부전공)	재 학 기 간
			상 태
			년 월~ 년 월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년 월~ 년 월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주 요 이 력 사 항	직업훈련	훈 련 기 관	훈 련 직 종
			훈 련 기 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보유자격 및 면허	1. (년 월 취득)	2. (년 월 취득)
	3. (년 월 취득)	4.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기타()		
외국어능력	외 국 어 명	수 준	공 인 시 험
		[]상 []중 []하	등 급/점 수
		[]상 []중 []하	

210mm×297mm(재활용품60g/㎡)

(뒤 쪽)

주요 경력 (*)	사업체명	직종	근무기간(년,월)	고용형태	임금	직무내용	퇴사사유
			~				
			~				
			~				

현재직업상태 []이직 []졸업(예정) []재직 []정년퇴직 []자영업 []가사·육아
 []휴학생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상이등급		
	중증여부	[]경증 []중증	장애등록일	년 월 일
	장애부위	주장애부위	부장애부위	
	보장구	[]휠체어 []보조기(좌우 양쪽) []목발(1 2) []의수(좌우 양쪽) []의족(좌우 양쪽) []스틱(1 2) []보청기(좌우 양쪽) []흰지팡이 []안내견 []기타()		

작업 능력	드느힘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5~20Kg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서거나 걷기	[]서거나 걷는 일 어려움	[]일부 서서하는 작업 가능	[]오랫동안 가능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는 작업 어려움	[]간단한 듣고 말하기 가능	[]듣고 말하기에 어려움 없음
	시력	[]일상적 활동 가능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손작업	[]큰 물품 조립가능	[]작은 물품 조립가능	[]정밀한 작업가능
	양손사용	[]한손작업 가능	[]한손보조작업 가능	[]양손작업 가능

워크투게더 공개여부(*) []전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http://www.worktogether.or.kr) * 전체공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구직신청사항
 부분공개: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를 제외한 구직신청사항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구직정보가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며, 법 제 16조와 제25조에 따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워크넷 사용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등) 및 구인등록 사업체에 공유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재활용품60g/㎡)

5.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7. 1.>

(3쪽 중 제1쪽)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www.esing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고용부담금: 즉시 고용장려금: 30일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주된 생산품)	⑥ 업종코드
⑦ 소재지	⑧ 사업장수	개
⑨ 사업체 전화번호	⑩ 사업체 팩스번호	⑪ 사업장 구분 [총괄] [사업장] [지점] [표준사업장]
⑫ 담당자 연락처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년 장애인 고용현황

월별	⑬전체 근로자수	⑭적용제외 근로자수	⑮상시 근로자수	⑯의무 고용인원	⑰장려금 기준인원	⑱장애인 근로자수		⑳미달 고용인원		㉑장려금 제외인원	㉒장려금 지급인원
						전체	경증 장애인	미고용월	고용월		
1월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											
12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전년도(12월) 장애인 고용현황	㉓ 장애인 고용률		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		㉕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㉖ 고용 예정직무	㉗ 전체 고용계획 인원	㉘ 장애인 고용계획 인원				시기	고용 방법
			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㉙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	원	은행명	계좌번호
⑳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	장려금/지원금 명칭	㉚ 계좌실명번호
			대상자수
			명
			금액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 분할납부 신청

⑳ 고용부담금 신고	원	수정신고	원	㉛ 고용장려금 산출액 신고	원	수정신고	원
㉜ 연계고용 감면액				㉝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원				원			
㉞ 실 납부금액 (= ㉚ - ㉛ - ㉜ - ㉝)							
㉟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제1기분(1.31.)	원	제2기분(4.30.)	원	제3기분(7.31.)	원
		제4기분(10.31.)	원				
㊱ 수정신고에 따른 고용부담금의 차액 = [(수정신고 금액㉚-㉛-㉜) - (신고 금액㉚-㉛-㉜)]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제5항·제8항·제10항, 제22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부록 3 작성계획안

<http://kostat.go.kr>

00시 장애인통계 작성계획(안)

2020. 0. 00.

작성기관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 1. 추진배경 139
- 2. 추진경과 139

II. 장애인통계 개요

- 1. 작성 개요 140
- 2. 업무 흐름도 142
- 3. 소요 예산 143

III.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

- 1. 작성기획 144
- 2. 자료입수 145
- 3. 보고서 작성 및 결과공표 147

[붙임] 통계표 주요 작성 항목(안)

I 추진배경 및 방향

1 추진배경

- 활용성과 시급성 등이 높은 지역단위 통계 확충 기반 조성과 고품질·저비용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 보급
-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발굴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저비용·고효율 행정통계 개발로 시정수립에 활용

2 추진경과

- 지방청-지자체 간 사전 업무협의
 - 1차(2.7.) 선행 및 유사 사례 검토, 장애인 관련 협의체 운영현황 파악
 - 2차(5.1.) 00시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자료요청 및 입수
- 행정통계 작성기법 공유를 위한 지방청 간 회의
 - 1차(3.3._충청청) '18년도에 작성된 장애인통계 작성 및 통계생산 방법 공유
 - 2차(6.2._호남청) 작성 중인 일자리정책 기반통계 작성 항목 및 방법, 활용 방안 및 자료 등 공유
- 실무 TF 구성 및 운영

실무 TF 구성(안)

- ▶(주관) 개발 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과장, 표준매뉴얼 개발 팀장, 담당주무관
- ▶(필수) 시범 작성지역 지자체, 지역통계총괄과 사업총괄
- ▶(자문) **지역 주민, 관련 사회단체, 지역연구원** 등

- 1차(4.28.): 표준매뉴얼 사업 소개 및 장애인통계 추진방향 검토, 논의
- 2차(8.11): 작성항목(안) 및 기본·자율통계표(안) 검토

- 지역주민 통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지역주민, 지자체 통계 및 정책 담당, 지역통계과 담당자,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가 등
 - (역할) 〇〇시 장애인통계 작성 및 기획단계에서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통계항목 제안 등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1차(5.13.) 지역주민(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관련 단체 요구사항 논의
 - 2차(8.11.) 서면자문 결과 공유 및 작성항목(안) 검토

II 장애인통계 개요

1 작성 개요

- 통계명칭: 〇〇시 장애인통계
- 법적근거: 일반통계, 가공통계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〇〇월 승인 예정)
- 작성목적: 〇〇시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인구·고용·복지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작성대상: 통계작성 기준 〇〇시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 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자로, 등록장애인 수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기준시점:** 2020. 0. 00.

※ 단, 일부 자료는 제공기관 및 지표의 성격에 따라 기준시점의 차이가 있음

○ **작성기간:** 2020. 1. ~ 2020. 12.

○ **작성주기:** ○년

○ **작성방법:** 00시, 중앙부처, 관련 기관 등 행정자료 보유기관에 자료를 요청, 집계하여 분석

※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은 대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작성항목(안):** 인구·복지·교육·고용·사회보장 등 5개 분야(※ 성별 구분)

분야	작성항목
인구 (4)	장애인 인구 현황(6), 지역별 장애인 인구 현황(3),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현황(6),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 현황(13)
복지 (6)	장애인 예산 현황(3),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3),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3),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4),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6), 00시 장애인 사업 현황(6)
교육 (3)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1), 특수교육 현황(4),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4)
고용 (3)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9),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9),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4)
사회서비스 (3)	장애인관련 시설 현황(7),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현황(3),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2)

※ 작성항목 :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고서 발간 및 결과 공표**

- 보고서 발간 및 결과 공표 : 2020. 12.

- KOSIS 자료 등록 : 2021. 1.

2 업무 흐름도

업무단계	주요 추진업무	추진일정
① 행정자료 파악 및 기본정보 수집	▶ 활용 가능 행정자료 파악 및 행정보유 기관 입수 협의	2~5월
↓		
② 전문가·관련 기관 의견 수렴	▶ 작성항목 및 통계표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5월~7월
↓		
③ 통계작성 계획(안) 수립	▶ 활용 행정자료 및 작성항목 등	8월
↓		
⑦ 통계작성 승인 신청	▶ 통계작성 승인 신청(00시)	9월
↓		
④ 행정자료 입수	▶ 자료 보유기관에 자료요청 및 입수	8~10월
↓		
⑤ 자료검토 및 보고서 작성	▶ 입수한 자료의 수치, 단위 등 검토 ▶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고서 작성	10~12월
↓		
⑥ 작성 결과 공표	▶ 작성 결과 공표(00시)	12월
↓		
⑦ KOSIS 서비스	▶ KOSIS 서비스 실시(00시)	익년 1월

3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총 액	일용임금 (110-04)	운영비 (210)	국내여비 (220-01)	업무추진비 (240-01)	고용부담금 (320-09)
계	21,513	8,934	9,086	2,300	250	943
OO시	21,513	8,934	4,086	2,300	250	943

○ 예산과목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내역
합계	21,513	
■ 일용임금	8,934	
- 업무보조원	8,934	68,720원*1명*130일(주휴일 포함)
■ 운영비	9,086	
- 자문료	1,800	200,000원*3명*3회
- 사무용품 등 운영비	1,550	소모품, 홍보용품 구입
- 공공요금	286	단기전화 설치 및 통신료
- 임차료	150	장비 임차료(PC 1대)
- 특근매식비	300	6,000원*50일*1명
- 보고서 인쇄비	5,000	OO시 자체 예산 활용
■ 국내여비	2,300	
- 행정자료입수기관 방문, TF 회의, 업무협의 등	2,300	담당자 업무협의, 자료취합 및 입수를 위한 기관 방문 등
■ 업무추진비	250	
- 간담회 및 자문회의	250	업무협의(25,000원*10명)
■ 민간이전	943	
- 산재, 고용, 국민, 건강	943	일용임금 * 0.1055%

III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

1 작성기획

- (기초조사) 통계에 이용될 자료 목록 및 보유 기관, 행정 자료별 수집 목적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여 통계 작성 시 활용 가능한지 사전 검토
-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정책, 연구, 통계분야)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
 - 자료 입수 방법, 자료의 품질(대표성, 시의성 등), 정책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표 선정, 협업을 통한 실행 방안 등 검토
- (통계표 설계) 작성 목적 및 입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계표 설계
 - 기본항목: 장애인통계 작성 시 기본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공통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
 - 자율항목: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 파악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항목
- (계획수립) 조사기획, 통계표 설계, 행정자료 입수, 통계표 작성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공표 등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참고하여 작성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작성단계	내 용
1. 조사기획	①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했는가? ② 통계작성계획에 통계 필요성,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 주기, 작성기준, 작성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③ 소요예산 산출 검토 내역을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했는가?
2. 통계표설계	① 관련 자료 입수 가능성을 파악하였는가? ② 관련 자료 기본정보를 수집하였는가? ③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본통계표를 반영하였는가? ④ 관련부서 수요조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자율통계표를 개발하였는가?

작성단계	내 용
3. 행정자료 입수	①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였는가? ② 자료 제공기관과 입수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였는가? ③ 원자료로 입수가 어려운 경우 집계표 형태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4. 통계표작성	① 행정자료별 데이터 속성에 대해 검토 및 정비하였는가? ② 고유 식별자(연계키)를 활용하여 해당 자료를 통계 작성용 데이터로 재구성하였는가? ③ 통계표 작성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5. 결과분석	① 설계한 통계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집계하였는가? ②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하였는가?
6. 보고서 작성 및 결과공표	① 결과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공표하였는가? ② 이용자의 올바른 통계 해석을 위해 해석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는가? ③ 통계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2 자료입수

- (자료입수)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통계작성 목적, 보안관리 등 공감대 형성 및 협의, 문서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되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 요구
 - 장애인통계 작성 필요성, 열악한 조사환경, 국민 응답부담 경감,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등 상호 공감대 형성
 - 행정자료 활용 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 방법 설명
 -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 제공)"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에 해당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됨
 - 행정자료별 레이아웃 및 속성 등 기본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자료 제공기관에는 통계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
 - 자료요청 시 "통계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행정자료의 명칭, 사용 목적, 내용, 정보보호 조치, 제공방법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

- (행정자료 입수기관 및 주요내용) 성남시,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에서 등록장애인, 의무고용, 특수교육,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자 현황 등 자료를 집계표 형식으로 입수

[자료 제공기관 및 주요내용]

구분	자료	제공기관	주요 내용	입수시기
인구	주민등록인구현황, 장애인현황, 등록장애인 자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〇〇시	· 연도별 인구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장애인 현황	10월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〇〇시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수급자구분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0월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〇〇시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10월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〇〇시	· 바우처 사업, 의료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등	10월
교육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특수교육 통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 특수교육 현황 · 특수교육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 특수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현황	9월
고용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성별, 연령별, 학력별, 임금별, 장애정도별, 직종별, 산업별 등 장애인 구직·구직 및 취업 현황	9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및 유형별, 직종별 등 의무고용 사업체 현황	9월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료	〇〇시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10월
사회 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 자료,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〇〇시	·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현황 등	10월

3 보고서 작성 및 결과공표

- (작성)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통해 입수한 통계표를 확정하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 입수한 통계표의 수치, 단위 등을 관련 간행물* 및 공표자료** 등과 비교 하여 일치 여부 확인
 -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 ** 주민등록인구 통계(행정안전부), 사회보장 통계(한국사회보장정보원), 특수교육 통계(교육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KOSIS)
 - 정확한 통계이용을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에 따른 한계점 및 이용자 유의사항 적시
 -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함께 그래프를 이용한 정보 제공
 - 초안 작성 후 행정통계 관련 전문가 및 관련부서 자문 등을 거쳐 내용보완 수정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수록 내용]

항목	수록내용
표제지	· 발간등록번호, 연도, 제목,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이용자를 위하여	· 이용시 유의사항, 문의처 등
목 차	· 통계개요, 주요 결과, 부문별 결과, 통계표, 부록
통계개요	· 작성목적, 법적근거, 작성주기, 작성방법, 결과 공표 등
작성항목	· 5개부문(인구, 복지,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주요결과 요약	· 5개 부문별 주요 결과 요약
부문별 결과	· 5개 부문별 세부 결과
부 록	· 통계표, 용어해설 등

- (공표) 보고서 발간('20. 12.)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록('21. 1.)
 -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통계' 작성결과를 OO시 홈페이지 (www.ooooooo.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

붙임

통계표 주요 작성 항목(안)

영역	세부지표	작성항목	구분	자료원
I. 인구 (28)	1-1. 장애인 인구 현황	1. 연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00시, 등록장애인 자료
		2. 성별 장애인 인구	공통	
		3. 연령별 장애인 인구	공통	
		4. 연령별 장애인 성비	공통	
		5. 생애주기별 장애인 인구	공통	
		6. 생애주기별 장애인 성비	선택	
	1-2. 지역별 장애인 인구 현황	1. 지역별 장애인 인구	공통	00시, 등록장애인 자료
		2. 지역별 장애인 성비	선택	
		3. 지역별 노인 장애인 인구	공통	
	1-3.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현황	1. 연도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00시, 등록장애인 자료
		2.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3.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4.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선택	
		5. 지역별 장애정도별 장애인 인구	공통	
		6. 지역별 장애정도별 노인 장애인 인구	선택	
	1-4.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 현황	1. 연도별 장애유형별(대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00시, 등록장애인 자료
		2. 연도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3. 연도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4. 성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선택	
		5. 성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선택	
6. 연령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7.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대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8. 장애유형별(소분류) 18세 미만 장애인 인구		선택		
9. 장애유형별(소분류) 18-64세 장애인 인구		선택		
10. 장애유형별(소분류)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선택		
11. 지역별 장애유형별(대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12.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인구		공통		
13.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인구		선택		

영역	세부지표	세부항목	구분	자료원
II. 복지 (25)	2-1. 장애인 예산 현황	1. 연도별 장애인 예산	공통	OO시, 복지예산 자료
		2. 장애인 국고보조사업 예산	자율	
		3. 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자율	
	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1.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통	OO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2.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통	
		3. 생애주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택	
	2-3.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1.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통	
		2. 성별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택	
		3. 연령별 수급자구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택	
	2-4.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1.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통	
		2. 성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택	
		3. 연령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택	
		4. 생애주기별 급여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택	
	2-5.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1. 성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공통	OO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자료
		2. 연령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공통	
		3. 생애주기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선택	
		4. 지역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공통	
		5. 장애정도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선택	
		6.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선택	
	2-6 OO시 장애인 사업 현황	1. 연도별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 현황	자율	OO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2. 월별 장애인 택시 바우처 이용 현황	자율	
3. 연도별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황		자율		
4. 연도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현황		자율		
5. 연도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자율		
6. 지역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자율		

영역	세부지표	세부항목	구분	자료원
Ⅲ.교육 (9)	3-1. 특수교육 어린이집		공통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3-2. 특수교육 현황	1. 특수교육 학교 및 대상자 2.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학교 및 대상자 3. 연도별 특수교육 졸업생 진학 및 취업 4. 졸업유형별 특수교육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공통 선택 선택 선택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3-3.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1. 연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2.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3. 학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4. 특수학급 설치별 장애인 편의시설	공통 선택 선택 선택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Ⅳ.고용 (22)	4-1.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1.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2. 성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3. 연령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4. 학력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5. 임금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6. 장애정도별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7. 직종별 장애인 구인 및 구직자 8. 산업별 장애인 구인 및 취업자 9.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구인 및 취업자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선택 공통 공통 공통 선택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4-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및 고용 현황 2. 성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3. 연령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4. 장애정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5. 장애유형별(중분류)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6. 장애유형별(소분류)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7. 직종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8. 공공기관 상위 직종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9. 민간기업 상위 직종별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선택 선택 선택 선택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4-3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1. 연도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2. 성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3. 지역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4. 연령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〇〇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자료
Ⅴ.사회 서비스 (12)	5-1. 장애인관련 시설 현황	1.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2.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3.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직업재활시설 이용 현황 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5.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6. 기타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평균임금 7. 연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공통	〇〇시, 장애인 복지사업 자료
	5-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현황	1. 장애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2. 연령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결과	공통 선택 선택	
	5-3.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 장애인 활동보조인 2. 연도별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실적	공통 공통	

※ 작성항목(안):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록 4 지역통계 표준프로세스 준수율 점검표(행정통계)

통계작성단계	표준프로세스 점검 체크리스트
1. 통계기획	①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했는가?
	② 통계작성계획에 통계 필요성,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 주기, 작성기준, 작성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③ 소요예산 산출 검토 내역을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했는가?
2. 통계표 설계	① 관련 자료 입수 가능성을 파악하였는가?
	② 관련 자료 기본정보를 수집하였는가?
	③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본통계표를 반영하였는가?
	④ 관련부서 수요조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자율통계표를 개발하였는가?
3. 행정자료 입수	①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자료제공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였는가?
	② 자료 제공기관과 입수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였는가?
	③ 원자료로 입수가 어려운 경우 집계표 형태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4. 통계표 작성	① 행정자료별 데이터 속성에 대해 검토 및 정비하였는가?
	② 고유 식별자(연계키)를 활용하여 해당 자료를 통계 작성용 데이터로 재구성하였는가?
	③ 통계표 작성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5. 결과분석	① 설계한 통계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집계하였는가?
	② 유사 통계와 수준분석을 하였는가?
6. 보고서 작성 및 결과공표	① 결과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공표하였는가?
	② 이용자의 올바른 통계 해석을 위해 해석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는가?
	③ 통계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부록 5 표준매뉴얼 문의처 안내



지역통계 표준매뉴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통계청	전화번호
지역통계총괄과	042) 481-3695
경인지방통계청	02) 2110-7600
동북지방통계청	053) 609-6500
호남지방통계청	062) 370-6000
동남지방통계청	051) 850-3300
충청지방통계청	042) 366-8114
강원지방통계지청	033) 258-3650



해당 지자체 관할 지방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호남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지방통계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지방통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지방통계지청	강원도

2020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장애인 통계

- 발 행: 2020년 12월
- 발 행 인: 통계청장 강신욱
- 편 집 인: 조사관리국장 최연옥
- 총괄기획: 지역통계총괄과
- 공동기획: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 발 행 처: 통계청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042-481-3607, 3695
-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발간번호: 11-1240000-001428-01
- ISBN 978-89-5801-456-0